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826
-----------	------

2020년 9월 8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8월 12일, 홍성룡 의원 외 16명
2.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9월 8일 상정, 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성룡 의원)

1. 제안이유

-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관련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8월 12일 홍성룡 의원 등 17명의 의원에게 의 해 의안번호 제1826호로 공동 발의되어 2020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 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과 '역사왜곡 기술'이 포함된 중학교 검 정 결과의 발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육일기(전범기) 사용 허용과 함께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제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 한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 문제 등이 한·일간 외교에 걸림돌로 작 용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와 공동 번영의 길을 가로 막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거듭된 일본의 시도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민간·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바 있습니다.¹⁾

- 한편 지난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기념되는 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회단체 등에서는 독립운동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노력과 함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부터 전국의 여러 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은 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조사하고 이를 청산하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 예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 지부는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일파 동상과 기념관 존치 여부, 친일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의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교가를 작사했거나 작곡한 학교는 총 113개교로 조사되었으며, 학교 내 친일인명사전 등재 인물의 동상이나 기념관이 설치된 곳도 7곳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²⁾
-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용어, 학교 문화, 학교 상징물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을 대표적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로 꼽기도 하였습니다.³⁾

[표-1]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의 종류

구분	일제 잔재
명칭/용어	반장, 부반장, 훈화, 파이팅, 방위, 순서표시 들어간 학교 이름, 감담회, 사정회, 결석계, 휴학계 등
학교문화/교육과정	차렷, 경례, 수학여행, 소풍, 수련회, 초등교과서 속 일제 잔재놀이

1) 교육부 보도자료(동북아교육대책팀, 2020.3.24.)

2) 전교조 “친일파가 만든 교가, 서울 113곳 학교서 사용” (서울경제, 2019.2.26.)

3) ‘차렷.경례’ 없는 학교... 경기도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OBS NEWS, 2019.8.27.)

학교 상징물/ 학교구조/ 법·제도	구령대, 조희대, 교실 정면 태극기, 친일파 작곡 교가, 가이즈카 향나무 교목
-----------------------	--

- 이와 같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단체들의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은 학교 내 잔존 가능한 일제 잔재를 찾아 청산함으로써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 분위기 조성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대상 기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징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교육 분위기 조성 및 교육기관 구성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특히 안 제2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징물”의 사전적 의미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⁴⁾, 안 제2조에서 정의한 학교 현장의 “상징물”은 교내 동상(흉상), 공덕비, 학교상징(교표), 교목, 일본인 교장 사진 등의 구체적 물체(사물)로 범위가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4) 네이버 국어대사전

- 그러나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교육 현장의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여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친일 경력자의 교가 작사·작곡, 교훈, 건물 명칭, 용어 등 다양한 일제 잔재 또한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따른 시책 수립 시 동 조례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제 잔존물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 밖에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0510, 2020.8.21.).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각급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